

제32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2026. 3. 27.(금)



경제건설위원회

- 목 차 -

1.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통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11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16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학상 운영 조례안	27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804호
- 발 의 일: 2026년 3월 6일
- 제 출 자: 곽동환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6년 3월 18일
- 상정 및 의결: 제32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6. 3. 19.)

2. 제안사유

- 현행 조례의 취약지역 지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행복택시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 간 교통복지 격차 완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대중교통 취약지역 요건 완화를 위한 지정 기준 신설(안 제2조제1호)
- 행복택시 이용자 부담금 완화(안 제5조제4항)

4.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취약지역 지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행복택시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 간 교통복지 격차를 완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제1호다목에 대중교통 취약지역 지정 기준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에서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마을 또는 시내버스 정류장과의 거리가 0.5km 이상인 마을에 대해 지원하던 것을 시내버스 운행 횟수가 1일 5회 이하 또는 배차간격이 2시간 이상인 마을까지 포함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안 제5조제4항에 이용자 부담요금을 동승자 포함 1,000원으로 정액화하여 현행 조례의 이용자 부담금을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일반인 기준 운임 1,700원(카드 1,500원)에서 크게 경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 교통약자 복지 향상, 교통비 부담 완화와 같은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관계법령에도 위배됨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

- 신달호 위원: 대중교통 취약지역 지정 기준을 확대하여 많은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그래도 수혜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부서에서는 확대 시행 후 취약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하는 오지마을이 있는지 조사해 볼 것을 당부함.

7. 심사결과: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805호
- 발 의 일: 2026년 3월 6일
- 제 출 자: 신동윤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6년 3월 18일
- 상정 및 의결: 제32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6. 3. 19.)

2. 제안사유

-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가 함께 생활하는 주거 형태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과 이웃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입주자 등이 서로 배려하며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지원 등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층간소음의 예방을 위해 행정청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름으로써 관련 법령과의 용어를 통일하여 법규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는 단체장이 담당해야 할 책무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어 본 조례에 담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 제6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층간소음관리 위원회 구성을 임의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안 제7조에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제1항제3호의 저감용품 구매 비용지원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군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또한,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관·단체 등의 다양한 주체와 협력이 필수이므로 안 제8조와 안 제9에서 협력체계 구축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되며, 무엇보다 중요한 홍보에 관하여 단체장의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주민 의식 개선에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건축과 제출 의견

조항	부서 의견
제7조제1항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인 간의 갈등 완화와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층간소음 관련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 등의 지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의 측정·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국가는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의 층간소음 개선 대책안 또한 리모델링 시 고성능 바닥구조 비용 또는 소음저감 매트 설치 비용에 대하여 융자해주거나 소음 측정·진단을 위한 시스템 지원 사업에 한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직접적인 비용 일부지원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85조에 의거 층간소음의 측정·진단에 관련한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됨.
제7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우리군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89,297세대이며, 층간소음의 경우 세대의 구성원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세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무리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고 사료됨. • 따라서, 지원사업이 필요한 세대의 조건을 부여하여 지원사업 대상 세대수를 한정하거나 실제 필요한 세대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해당 상황을 파악 검토할 수 있는 관리주체에서 지원사업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에 대해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반드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사무에 대해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는 ~ 비용의 일부를 용자할 수 있다.’로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업무 범위 또는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기보다 재량의 범위 내에서 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예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 등의 지원)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의 측정·진단에 필요한 비용(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운영 비용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개량,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용자할 수 있다.

-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제2항2호가목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같은 항 제4호마목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안 제7조제1항제3호의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용품 설치·구매 비용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법령에서 특정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상위 법령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면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음으로 본 조례안 제7조 지원 등 사업의 규정은 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닌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재량의 범위에서 예시 사업을 열거한 규정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통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적정한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지원사업이 필요한 세대의 조건, 사업의 대상 세대수, 신청 방법까지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법규 적용에 경직성의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으며, 조례에서는 각호의 사항으로 열거하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이 적당하고, 사업의 세부 사항은 집행기관에서 조례안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조례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의 촉진, 층간소음 저감용품 설치비용 지원과 같은 시책의 추진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이 행복한 주거공동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고 관계법령에도 위배됨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관련 언론보도

울산시,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 대상 1자녀 가정까지 확대 세대 당 최대 지원금도 140만 원까지 상향 지원

울산시는 지난해 처음 시행한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을 올해는 1자녀 가정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세대당 지원 금액을 최대 140만 원까지 상향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시범사업 실시 결과에 따른 5개 구군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지난해 ‘울산광역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가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첫째 자녀 때부터 층간소음 저감매트를 준비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기존 미성년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서 미성년 1자녀 이상 가정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 지원 대상자에게 현실적으로 시공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세대당 지원금을 기존 최대 7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번 상향 조정 결정은 층간소음 저감매트 시공 비용이 시공 면적과 매트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울산시 아파트 중 가장 비율이 높은 30평형 아파트 거실주방을 시공할 경우 2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한 데 따른 것이다.

2026년도 사업은 오는 2월 사업대상자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 3월경 신청서를 접수 받을 예정으로, 구군 실정에 따라 시행 시기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저감시키고, 가정 내에서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건전한 공동체 형성과 시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nbnews 한호수기자 | 2026. 1. 29.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

- 광동환 위원장: 층간소음 관련 주민 간 갈등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생각되는데, 우리 지역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관련 주민 간 갈등이 있거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가 있는지 질의함.
- ☞ 건축과장(김호경): 현재까지 층간소음관련 민원이 우리 군으로 접수된 건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806호
- 발 의 일: 2026년 3월 6일
- 제 출 자: 박영동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6년 3월 18일
- 상정 및 의결: 제32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6. 3. 19.)

2. 제안사유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여 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군수의 책무 및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폐기 지원업소의 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지원 제한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관계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노후 농기계의 조기폐차를 지원하여 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대기환경보전법」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을 따름으로써 관련 법령과의 용어를 통일하여 법규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에서 ‘노후 농기계’를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으로 규정한 것은 2013년부터 트랙터와 콤바인도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이전에 생산된 농기계를 ‘노후 농기계’로 규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 제3조는 단체장이 담당해야 할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본 조례의 입법목적은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 제4조 적용범위에서는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농기계뿐만 아니라 기대번호의 확인 등으로 생산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농기계와 군수가 조기 폐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기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농기계 등록(신고)제¹⁾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 현 상황에서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궁극적인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1) 농업기계 등록제는 1978년에 제정된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운전면허 대상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등록을 의무화하였으나 운전면허 및 등록 관련 세부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되지 못하다가 1994년에 「농업기계화촉진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음.

- 안 제5조에 지원 대상을 군민과 군 소재의 농업법인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보조금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안 제6조는 폐기 지원 업소 지정·해제 규정으로 폐기 지원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제6조제4항에 따라 폐기 지원 업소가 노후 농기계 폐기 관련 자료를 보관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기관의 지도와 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 안 제7조에 지원 제한 및 환수 규정은 제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원인이 되는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 탄소중립 실현을 통해 군민의 건강 증진과 농촌 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관계법령에도 위배 됨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집행기관의 예산의 확보 노력이 필수라고 생각되며, 조기폐차 후 저공해 엔진을 탑재한 신규 농기계에 대한 구입비 지원 등의 사업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

2026년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저감대책 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노후 농업기계('12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 콤바인) 조기폐차 지원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농업기계 분야 경제성, 환경성, 안정성 등 실현
- 지원단가: 해당 지원단가는 농기계 규격(마력), 생산연도(~'12년)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차등 지원
- 광역지자체별 사업예산

(단위: 천원)

구분	계	국비	지방비	비고
계	5,198,000	2,599,000	2,599,000	
대구광역시	26,000	13,000	13,000	달성군: 7,000 군위군: 19,000
인천광역시	60,000	30,000	30,000	
광주광역시	8,000	4,000	4,000	
대전광역시	20,000	10,000	10,000	
울산광역시	26,000	13,000	13,000	
세종특별자치시	4,000	2,000	2,000	
경기도	474,000	237,000	237,000	
강원특별자치도	298,000	149,000	149,000	
충청북도	210,000	105,000	105,000	
충청남도	654,000	327,000	327,000	
전북특별자치도	828,000	414,000	414,000	
전라남도	708,000	354,000	354,000	
경상북도	1,202,000	601,000	601,000	
경상남도	600,000	300,000	300,000	
제주특별자치도	80,000	40,000	40,000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

- 광동환 위원장: 본 조례안에서는 노후 농기계를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경운기와 같은 소형 원동기 장치 농기계까지 포함하는 것은 어떤지 사업부서에 의견을 질의함.
- ☞ 농업정책과장(박찬주): 본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의 예에서 보더라도 노후농기계를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는 배출가스 량이 많은 일정 규모 이상의 원동기에 대해 조기폐차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추후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795호
- 발 의 일: 2026년 3월 5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6년 3월 18일
- 상정 및 의결: 제32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6. 3. 19.)

2. 제안사유

- 달성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운송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운송사업자의 편의 제공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본 조례의 목적 규정(안 제1조)
- 공영차고지 이용허가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공영차고지의 이용료 규정(안 제5조)
- 공영차고지의 이용자 의무 규정(안 제7조)
- 공영차고지의 위탁 근거 규정(안 제8조)

4.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화원읍 설화리 809번지, 옥포읍 간경리 253-1번지 일원에 조성된 달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 환경을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달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목적과 정의, 시설의 위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과의 용어를 통일하여 법규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공영차고지의 이용신청과 이용료, 이용료 반환, 이용자의 의무 및 행위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공영차고지의 관리·운영 위탁 사항을 규정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은 달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화물자동차의 차고지의 불법 주차 및 밤샘주차로 인한 민원해소와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부족 완화, 화물운송업 종사자의 복리향상 등 지역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물류 경쟁력 강화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관계 법령에도 위배 됨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공영차고지의 운영성과 측정, 이용만족도 조사 등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합리적인 이용요금 체계와 군민을 우대하는 감면 규정 등의 정비도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참고] 대구시 공영차고지 이용 요금표 비교

(단위: 원)

화물자동차								
적용기준	구분	1.4톤 미만	3.5톤 미만	5톤 미만	8톤	11톤	25톤	추레라
2시간 이내	달성군	1,000	1,000	1,000	2,000	2,000	2,000	5,000
	신서	1,000	1,000	1,000	2,000	2,000	2,000	5,000
	금호	1,100	1,100	1,100	2,200	2,200	2,200	4,400
	태전	-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6시간 이내	달성군	2,000	2,000	2,000	3,000	3,000	3,000	7,000
	신서	2,000	2,000	2,000	3,000	3,000	3,000	7,000
	금호	2,200	2,200	2,200	3,300	3,300	3,300	6,600
	태전	-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12시간 이내	달성군	2,000	3,000	3,000	5,000	5,000	5,000	9,000
	신서	2,000	3,000	3,000	5,000	5,000	5,000	9,000
	금호	2,200	3,300	3,300	4,400	4,400	4,400	8,800
	태전	-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추가 12시간 마다	달성군	2,000	2,000	2,000	2,000	2,000	3,000	5,000
	신서	2,000	2,000	2,000	2,000	2,000	3,000	5,000
	금호	2,200	2,200	2,200	2,200	2,200	3,300	4,400
	태전	-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1일	달성군	5,000	6,000	6,000	7,000	7,000	8,000	14,000
	신서	5,000	6,000	6,000	7,000	7,000	8,000	14,000
	금호	-	-	-	-	-	-	-
	태전	-	-	-	-	-	-	-
밤12시 이후 할증	달성군	-	-	-	-	-	-	-
	신서	-	-	1,000	1,000	1,000	1,000	2,000
	금호	-	-	1,100	1,100	1,100	1,100	2,200
	태전	-	-	-	-	-	-	-
월정기 주차	달성군	32,000	42,000	53,000	63,000	73,000	91,000	115,000
	신서	35,000	46,000	58,000	69,000	81,000	101,000	127,000
	금호	33,000	44,000	55,000	66,000	77,000	99,000	121,000
	태전		46,000	58,000	69,000	81,000	101,000	127,000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

- 신동윤, 박영동 위원: 이용료 징수에 관해 군민 우대사항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 ☞ 교통행정과장(임정근): 일정기간 운영 후 이용만족도, 주민 의견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군민에 대한 이용료 감면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797호
- 발 의 일: 2026년 3월 5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6년 3월 18일
- 상정 및 의결: 제32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6. 3. 19.)

2. 제안사유

- 우리군에서 주최·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축제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를 발굴 및 육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역축제 추진을 위한 출연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지역축제 추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6조)
- 지역축제 추진에 따른 체험 및 부대행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지역축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우리군에서 주최·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축제의 발전 기반 조성과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를 발굴·육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면서 ‘지역축제’를 비슬산 참꽃 문화제, YES! 키즈존, 달성 100대 피아노 등으로 개별 축제명을 조례 본문에 직접 예시하는 것은 향후 축제 명칭이나 운영 형태가 바뀔 때마다 조례 개정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어 입법기술상 다소 경직적인 조문으로 생각됩니다.
 - 안 제4조는 지역축제를 활성화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출연 및 재정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지역축제의 기획·운영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한 위탁 근거 및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체험 및 부대행사의 제공하고 이용자가 만든 기념품 등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축제 이용자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참여하는 축제 환경을 조성하여 축제의 만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셔틀버스 운영으로 축제장 접근성을 개선하고 교통 혼잡 및 주차 문제를 완화하여 방문객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본 조례안은 지역축제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축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객 유치 확대와 그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축제 발전 기반을 통해 지역문화 진흥과 주민 참여 확대,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며, 관계 법령에도 위배됨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

- 김보경 위원: 특정 축제 명칭의 변경이나 신설 때마다 반복되는 불필요한 조례 개정의 번거로움을 해소하여 행정 효율을 높이고, 셔틀버스 운영과 축제 개최 시 필요한 안전관리 규정을 보완하여 군민과 관광객이 더욱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 환경을 조성하고자 수정 동의함.

- 수정동의안 주요내용

- 안 제2조제1호의 명시되었던 개별 축제 명칭을 삭제
- 안 제8조의2에 셔틀버스 탑승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
- 안 제9조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

7. 심사결과: 수정가결

- ※ 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 동의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안

의 번	안 호	2807
--------	--------	------

발의연월일 : 2026. 3. 19.

발 의 의 원 : 김보경 의원

곽동환 의원, 신달호 의원

신동윤 의원, 박영동 의원

1. 수정이유

- 특정 축제 명칭의 변경이나 신설 때마다 반복되는 불필요한 조례 개정의 번거로움을 해소하여 행정 효율을 높이고, 셔틀버스 운영과 축제 개최 시 필요한 안전관리 규정을 보완하여 군민과 관광객이 더욱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 제2조 “지역축제“ 의 정의를 합리화
- 조례안 제8조의2 셔틀버스 탑승제한 규정 신설
- 조례안 제9조 안전관리 규정 신설
- 기존 조례안 제10조 위임 규정 삭제

붙임 수정동의안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비슬산 참꽃 문화제, YES! 키즈존, 달성100대 피아노 등과 같은”을 “다수의 군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로 하며,

제8조제4항 “예산부족,”을 “예산부족 등”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군수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탑승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2. 음주, 흡연, 고성방가 등으로 운행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
3. 차량, 비품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군수는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한다.
- ② 축제 개최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 위임 규정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안)과 수정동의(안)의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동 의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지역축제”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하 “군”이라 한다)이 문화예술과 관광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등을 목적으로 주최·주관하는 <u>비슬산 참꽃 문화제, YES! 키즈존, 달성 100대 피아노 등과 같은 각종 축제 및 행사를 말한다.</u>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축제로 보지 아니한다.</p> <p>가. ~ 다. (생략)</p> <p>2. ~ 4. (생략)</p> <p>제8조(셔틀버스) ① ~ ③ (생략)</p> <p>④ 군수는 <u>예산부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u> 셔틀버스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p>	<p>제2조(정의) -----</p> <p>-----.</p> <p>1. -----</p> <p>-----</p> <p>-----</p> <p>-----다수의 군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p> <p>-----.</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8조(셔틀버스)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u>예산부족 등</u> -----</p> <p>-----.</p>

조 례 안	수 정 동 의 안
<p><u><신 설></u></p>	<p>제8조의2(셔틀버스 탑승제한) 군수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탑승을 제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2. 음주, 흡연, 고성방가 등으로 운행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 3. 차량, 비품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u><신 설></u></p>	<p>제9조(안전관리) ① 군수는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p> <p>② 축제 개최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p>
<p>제9조(포상) 군수는 지역축제 활성화에 상당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p>	<p>제10조(포상) 군수는 지역축제 활성화에 상당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p>
<p>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u><삭 제></u></p>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학상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798호
- 발 의 일: 2026년 3월 5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6년 3월 18일
- 상정 및 의결: 제32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6. 3. 19.)

2.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문학 진흥을 위해 유능하고 역량 있는 문학인을 발굴하여 우리 사회 전반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여건을 개선하고 문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달성문학상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문학상 행사 주최 및 주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문학상 공모 자격 및 시상 등에 대한 규정(안 제4조~제6조)
- 문학상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 문학상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3조)
- 문학상 수상작 및 수상자 등에 대한 규정(안 제15조~제17조)

4. 관계법령

- 「문학진흥법」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달성군의 문학 진흥을 위해 유능하고 역량 있는 문학인을 발굴하여 우리 사회 전반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여건을 개선하고 문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달성문학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에서 달성문학상은 달성군이 주최하고 달성문화재단이 주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 추진의 책임성과 실행체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공모, 공모자격, 시상까지 문학상 운영의 기본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는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위원 구성, 임기, 회의, 심사결과 제출, 심사위원 공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심사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 안 제13조와 안 제16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심사내용 공표금지, 이중 시상 금지, 부정행위 적발 시 수상 취소 및 반환청구 절차 등을 규정하여 문학상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19조는 세부 운영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탄력성도 확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 본 조례안은 지역 문학인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우수 문학작품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역문화 진흥과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문학상 운영의 기준과 절차를 조례로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 공정성 및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 취지는 타당하며 관계 법령에도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시행 과정에서 공모 분야, 심사기준, 상금 규모 등 세부사항을 규칙 또는 운영지침으로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겠습니까.

【참고】

타 자치단체 문학상 관련 조례 현황

■ 자치단체명 문학상(8건)

법 규 명	비 고
장흥문학상 운영 조례	
완도군 문학상 운영 조례	
무안군 문학상 운영 조례	
목포문학상 운영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 문학상 운영 조례	
삼척시 삼척 문학상 운영 조례	
부천 국제문학상 운영 조례	

■ 특정 인물·사건 관련 문학상(27건)

법 규 명	비 고
진주시 문학상 운영조례	형평문학상,이형기 문학상,형평지역문학상
통영시 문학상 운영 조례	청마,김춘수시,김상옥시조,김용익소설 문학상
담양군 송순문학상 운영 조례	
영월군 김삿갓문학상 운영 조례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보성군 조정래 문학상 운영 조례	
신안군 최하림 문학상 운영 조례	
충주시 권태응 문학상 운영 조례	
보은군 오장환 문학상 운영 조례	
남원시 혼불문학상 운영 조례	
함양군 최치원 문학상 운영 조례	
김해시 구지가 문학상 운영 조례	
곡성군 조태일문학상 운영 조례	
의령군 천강문학상 운영 조례	
군산시 채만식 문학상 조례	
고흥군 송수권 시 문학상 운영 조례	
고창군 고창신재효문학상 운영 조례	
익산시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	
나주시 백호임제문학상 운영 조례	
서울시 성동구 소월문학상 운영 조례	
청도군 이호우·이영도시조문학상 조례	
서울은 평구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운영 조례	
부산 중구 밀다원시대 문학상 운영 조례	
부산동래구 우하 박문하 문학상 운영 조례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제주 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강진군 영랑·현구문학상 운영 조례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

- 김보경 위원: 운영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수정 동의함.
 - 수정동의안 주요내용
 - 안 제8조 운영위원회 구성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해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과 문학 부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각호 규정을 신설

7. 심사결과: 수정가결

※ 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학상 운영 조례안 수정동의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학상 운영 조례안 수정동의안

의안 번호	2808
----------	------

발의연월일 : 2026. 3. 19.

발의의원 : 김보경 의원

곽동환 의원, 신달호 의원

신동윤 의원, 박영동 의원

1. 수정이유

- 운영위원회 구성을 구체화하여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 제8조제3항(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관하여 달성군에서 추천한 군의원과 문학 부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명확화

붙임 수정동의안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학상 운영 조례안 수정동의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문학상 업무 담당과장과 재단 대표이사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1.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문학 부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안)과 수정동의(안)의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동 의 안
<p>제2조제3항(운영위원회 구성 등)</p> <p>③ 당연직 위원은 문학상 업무 담당 과장과 재단 대표이사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학 부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p>	<p>제2조제3항(운영위원회 구성 등)</p> <p>③ 당연직 위원은 문학상 업무 담당 과장과 재단 대표이사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문학 부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799호
- 발 의 일: 2026년 3월 5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6년 3월 18일
- 상정 및 의결: 제32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6. 3. 19.)

2. 제안사유

- 현행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의 휴관일 규정을 현실성 있게 보완하고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 수정,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면책 규정을 삭제하여 달성화석박물관의 관리·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휴관일 변경(안 제5조)
- 관람료 감면 규정 변경(안 제8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면책 규정 삭제(안 제34조)
- 시설사용료 면제 및 감면 규정 변경(안 제36조)
- 관람료 구분 기준 변경(별표 1)

4.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민법」, 「국가배상법」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휴관일,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을 현실성 있게 수정하고 법제처의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에 따른 정비 권고에 따라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달성화석박물관의 관리·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에 휴관일 규정을 변경하여 박물관 이용객의 이용 편의를 강화하였습니다.
 - 안 제8조에 달성군과 자매결연한 지방자치단체 주민에 대한 관람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상호 방문을 촉진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나아가 관광수요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현행 조례 제34조는 공공시설 운영 수탁자·사용자 등에게 해당 공공시설을 운영 또는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을 전부 면책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면책 조항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당 면책규정을 삭제하여도 수탁자·사용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법」의 손해배상법리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안 제36조는 박물관 활성화 목적의 시설사용 허가에 대해 시설사용료 면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 [별표 1]의 관람료 구분 기준을 모호한 ‘~’ 기호를 삭제하고 ‘이상’, ‘이하’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달성화석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운영 기준과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은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공공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과 취지에 위배됨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 해당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800호
- 발 의 일: 2026년 3월 5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6년 3월 18일
- 상정 및 의결: 제32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6. 3. 19.)

2. 제안사유

- 법제처의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 정비 권고에 따라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면책 규정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장의 면책 조항을 삭제(안 제9조)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업에 따른 정비 권고에 따라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 제9조제2항은 공공시설 운영 수탁자·사용자 등에게 해당 공공시설을 운영 또는 사용하면 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을 전부 면책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면책 조항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또한, 해당 면책규정을 삭제하여도 수탁자·사용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법」의 손해배상법리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 해당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